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문희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6
----------	------

발의연월일 : 2020. 9. 18.

발 의 자 : 문희성, 김지근, 강혜경
박경흠, 김기환, 신성봉,
권태호, 박채연, 이명녀
노세영, 안영호

1.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보조금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안 제1조~제3조)

나. 지도 및 감독,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4조~제6조)

다. 준용, 포상(안 제7조~제8조)

3. 근거법규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지역회의 등)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해 검사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 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에 대해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